

# 2013년도 제 11회 「기쁜우리장학지원사업」

모집요강

 사업명 제 11회 기쁜우리장학지원사업



 운영 주최 –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기쁜우리복지관  
주관 – 기쁜우리복지관 장학지원사업부

## 사업목적

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대학생 및 장애부모가정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, 학업을 지속하여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인식을 개선하여 건강한 사회통합을 꾀하며, 아울러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사업대상

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장애부모 가정의 2,3학년 대학생

##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

내 용	선발인원	1인당 총 지급액	비 고
기쁜우리장학금	15명	5백만원	연 2회 분할지급

## 지원자격

모집 대상	지원자격
장애대학생 & 장애부모 자녀 대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☞ 이웃사랑실천(지원봉사) 연 35시간 이상(2012년1월~2013년2월) 활동 실적자료(공인기관 인증) 제출</li><li>☞ 2012년 1,2학기 성적 각 3.7학점 이상인 자 (각 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목 중 F학점이 없는 자)</li><li>☞ 대학교 학과장 또는 행정기관, 협회 등 단체장, 성당 주임신부님이 추천하는 저소득 계층의 장애대학생 또는 장애부모 자녀 대학생</li><li>☞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령하지 않아야 함 단, 대학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장학금 내용 증명서 제출에 따른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함</li></ul> <p>※ 위 사항을 공히 충족하는 지원자에 한함</p>



## 제출서류

- ① 장학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② 학과장 및 단체장 또는 성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1부  
 ※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([www.gibbun.or.kr](http://www.gibbun.or.kr))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것
- ③ 2012학년(1,2학기) 성적증명서 1부
- ④ 재학증명서 1부
- ⑤ 자기소개서 1부
- ⑥ 이웃사랑실천확인서 1부(2012년1월 ~ 2013년2월까지 공인된 기관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)
- ⑦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 1통
- ⑧ 장애인 증명서 1부(장애인부모 가정 학생인 경우 부모의 장애인증명서)
- ⑨ 수급자증명서(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해당자에 한함)

## 접수 및 문의

- ☞ 접수기간 : **2013년 6월 3일 ~ 6월 25일까지**
- ☞ 접수방법 : 우편접수만 가능(당일소인까지유효)
- ☞ 보낼 곳 : 우편번호 (157-807)  
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66번지 기쁜우리복지관 장학지원사업 담당자 앞
- ☞ 문의 : Tel (02)3663-2386~7 Fax (02)3665-3292

## 세부일정

항 목	일 정	내 용
사업홍보	5월13일 – 5월24일	전국 대학교, 장애인복지시설 안내공문 발송
서류 접수	6월3일 – 6월25일	장학지원 사업신청서 제출자
서류 심사	6월26일 – 6월28일	1차 서류 전형
최종 선발 및 통보	7월 5일	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
장학금수여식	7월 19일	제11회 기쁜우리장학지원사업 장학금 수여식
장학생 캠프	추후 공지	1박2일 연수 등 참여활동 일정 안내

  
**☞ 문의전화**  
**(02) 3663-2386~7**

  
[www.gibbun.or.kr](http://www.gibbun.or.kr)



## 학점 심사기준

- ① 장애학생, 장애부모 자녀 대학생의 이웃사랑실천(자원봉사활동) 정도를 심의하며, 장애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의 제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(뇌병변, 시각장애, 지체장애 등) 경우 심사를 통해 봉사활동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정
- ② 신청 대학생의 2012년 1,2학기 성적으로 각 학기 평점 3.7학점 이상인 학생을 기준으로 성적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- ③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
- ④ 심사위원회는 법인 이사장, 복지관장, 사업담당 부장,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

## 장학금 지급 방식 및 지원 기간

- ① 제 11회 기쁜우리장학금 선발자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2013년 2학기, 2014년 1학기로 2회 분할하여 연속 지급 단, 매학기 18학점 및 평점 3.7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매학기 성적표 제출
- ② 1년 장학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2013년 기쁜우리장학금 선발자는 기준 최소자격 유지를 전제로 다음 2014년 제12회 장학생 선발 시 신청가능하며, 내부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함
- ③ 장학금은 연속학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 시 지급이 중단되며, 개인별 장학금 총 지급 회수는 정규 학기수를 초과하지 않음

## 계속 장학금 지급 중단

- ① 이수학점(18학점) 및 성적 기준(평점3.7점) 미달 시
- ② 성적표,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류 미제출
- ③ 해당 장학금 지급기간 중 휴학 시 지원 중단
- ④ 불미스러운 행위로 기소되거나 학사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
- ⑤ 군입대, 질병,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
- ⑥ 본 법인 및 복지관의 장학사업 관리를 위한 필수 활동에 비협조적인 경우
- ⑦ 교환학생 등으로 선발되어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경우
- ⑧ 취업 확정에 따른 출근 또는 연수원 등에 입소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된 경우

## 기쁜우리장학생 의무규정 사항

- ① 기쁜우리복지장학생은 본 법인 및 복지관의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함
- ② 본 법인 및 복지관 제반 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, 본 관 및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
- ③ 장학생 선발자는 장학금 수여식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지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
- ④ 기쁜우리장학생으로서 매 학기 적용된 성적을 유지해야 하며, 매 학기 성적표 제출 및 상담 등 각종 장학생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
- ⑤ 타 기관(대학 내 성적장학금은 가능)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중복하여 장학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하며, 장학금 중복 시 반드시 본 관에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야 함
- ⑥ 본 복지관 사업에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의 참여활동 수행(추후 공지)
- ⑦ 상기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정지 및 장학생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\* 장학금 수여식 참가 및 장학생 의무이행 동의서를 제출